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전 내역

연번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2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3	○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4	○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위원회
5	○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책기획과	"
6	○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7	○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
8	○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9	○ 성남시 동의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0	○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1	○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	경제환경위원회
12	○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13	○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14	○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
15	○ 성남시 사환곡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
16	○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업지원과	"
17	○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

연번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18	○ 성남시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정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9	○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0	○ 2008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회 계 과	"
21	○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환경관리과	"
22	○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증대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			청소행정과	"
23	○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하수관리과	"
24	○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위 원 회
25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족여성과	"
2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위생과	"
27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체육청소년과	"
28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
29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문화예술과	"
30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안			토지정보과	도시건설 위 원 회
3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법무과	회계연도40일 (11.21일)이전 제출(지방자치 법제127조)
32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	"
3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국도비부담 지원금 조정 (확정시기감안) 으로 추후제출
34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07. 10. 4 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조정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 ○ 제3조 중 “월정수당은 월2,066,000원으로”를 “월2,880,000원으로”로 개정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 원 회
2	성남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07. 5. 11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 ○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7. 11. 6공포)에 의거 시 기구가 개편되어 ○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 제7조의2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방법도 이를 개정하여 선임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3	성남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주요골자 ○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 ○ 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비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를 “성남시정보문화센터”로 개정 ○ 제4조제1항 중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를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로 개정 ○ 제5조제4항을 삭제 ○ 제7조2제2항 중 “교섭단체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개정 ○ 제7조2 제4항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 제1항”으로 개정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시의회에 맞도록 성남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으로 개정	의회사무국	의회운영 위원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 단체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안 제4조제2항). ○ 심사기준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 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여행목적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안 제5조) ○ 회 의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안 제6조). ○ 수당 및 여비 •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안 제7조)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4	성남시 시정소식 발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및 일부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표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함. ☐ 주요골자 ○ 성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및 제10조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공보담당관	자치행정 위 원 회
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금년 12월부터 도춘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도춘동) 설치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에 맞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하부행정기관 신설 및 소재지 • 하대원동을 하대원동, 도춘동으로 분동 • 소재지 - 하대원동 : 성남시 중원구 공단로 200 (하대원동 145-1번지) - 도 춘 동 : 성남시 중원구 도춘동 633번지 - 성 남 동 : 성남시 중원구 복지촌1길 135 (성남동 3439번지) ○ 동사무소 명칭변경 • 현행 : ○○○동사무소 • 변경 : ○○○동주민센터	정책기획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6	성남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금년 12월부터 도춘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 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한 행정기구 (도춘동) 설치와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운영중인 한시정원 연장 등 행정수요 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을 위한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 정원 : 2,513명 → 2,515명(증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478 → 2,480(증2명) - 의회사무국의 정원 : 35명 → 35명(변동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3조) • 일반직 정원조정 : 1,990명 → 1,994명(증4명) - 5급 : 131명 → 132명(증1명) - 6급 : 431명 → 432명(증1명) - 7급 : 644명 → 644명(변동없음) - 8급 : 522명 → 522명(변동없음) - 9급 : 244명 → 246명(증2명) • 기능직 정원조정 : 503명 → 501명(감2명) - 9급 : 166명 → 165명(감1명) - 10급 : 202명 → 201명(감1명)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2명) : 7급 1명, 8급 1명 - 당초) 2007. 12. 31 → 변경) 2008. 12. 31.	정책기획과	자치행정 위 원 회
7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하대원동 분동에 따른 도춘동 통·반 신설. ○ 하대원동과 생활권이 동 떨어진 여수동·갈현동 지역 통·반을 도춘동으로 편입	자치행정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요골자 ○ 중원구 하대원동 분동 및 도촌동 신설에 따른 통·반 신설 • 하대원동 : 25통 151반 ⇒ 22통139반(△3개통 12개반 감소) • 도 촌 동 : 16통 92반(16통 92개반 증가) ※ 시전체 1,154통 6,959반 ⇒ 1,167통7,039반 으로 13통 80반 증가 □ 제안이유 ○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기준 중 현실과 불부합 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막기 위해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불필요한 자구 삭제 □ 주요골자 ○ 장학생 자격요건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학금 신청기회의 폭을 넓히고,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의 신청자격을 입상경력 등으로 구체화 하며(제2조)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조건을명시(제2조) ○ 선발기준에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제4조)	자치 행정과	”
9	성남시 동의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하대원동 분동 및 도촌동택지개발로 구획정리에 따른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자치 행정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0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주요골자 ○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함(별표) <table><tr><th colspan="2">현 행</th><th colspan="2">개 정</th></tr><tr><th>동 명</th><th>관 할 구 역</th><th>동 명</th><th>관 할 구 역</th></tr><tr><td rowspan="2">도촌동</td><td rowspan="2">도촌동중 1~393, 401~401-6,402-1~472-2, 428~429-4, 429-6, 440, 440-1, 441, 443,464, 466, 470, 471, 474-2, 산1-1,산1-2,산2~산77, 산84~87</td><td>도촌동</td><td>도촌동 1~15-2, 15~5, 17~22-1, 22-3~ 25-4, 26~26-1, 27-1~27-5, 30~30-2, 46-3~65-2, 79~87-1, 150, 169, 171~177, 182~187, 197, 289~260, 328~329, 332, 413~428-1, 440~466, 504~754번지 산1~13, 산14~32, 산37~37-1, 산40, 산41-144-3,산44-6~46, 산46-2, 산47, 산48-1~48-3, 산48-7~49, 산49-2, 산50, 산50-3 ~51-6, 51-11~61, 산67-3, 68~69,산70-2~72-1, 산77, 산78, 산79-1~79-3, 산80,81-1~81-2,산84,산86번지</td></tr><tr><td>갈현동</td><td>갈현동 1~515-1, 515-4, 516, 516-2, 517~ 519-10, 520~551-4, 산1~156-13 ,산158-4,산158-6,산159~165-2 번지</td></tr></table> □ 제안이유 ○ 하대원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설치와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자 동 조례를 개정 □ 주요골자 ○ 행정동의 명칭·동장정수 관할구역을 조정함(별표) <table><tr><th colspan="3">현 행</th><th colspan="3">개 정</th></tr><tr><th>행정동</th><th>동장 정수</th><th>관 할 구 역</th><th>행 정 동</th><th>동장 정수</th><th>관 할 구 역</th></tr><tr><td rowspan="2">하대원 동</td><td rowspan="2">1</td><td rowspan="2">여수동,도촌동,갈현동 일원하대원중100~537의9,538의1,산1~산22의1,산31~산46</td><td>하대원동</td><td>1</td><td>하대원동 일원</td></tr><tr><td>도 촌 동</td><td>1</td><td>도촌동,여수 동,갈현동 일원</td></tr></table>	현 행		개 정		동 명	관 할 구 역	동 명	관 할 구 역	도촌동	도촌동중 1~393, 401~401-6,402-1~472-2, 428~429-4, 429-6, 440, 440-1, 441, 443,464, 466, 470, 471, 474-2, 산1-1,산1-2,산2~산77, 산84~87	도촌동	도촌동 1~15-2, 15~5, 17~22-1, 22-3~ 25-4, 26~26-1, 27-1~27-5, 30~30-2, 46-3~65-2, 79~87-1, 150, 169, 171~177, 182~187, 197, 289~260, 328~329, 332, 413~428-1, 440~466, 504~754번지 산1~13, 산14~32, 산37~37-1, 산40, 산41-144-3,산44-6~46, 산46-2, 산47, 산48-1~48-3, 산48-7~49, 산49-2, 산50, 산50-3 ~51-6, 51-11~61, 산67-3, 68~69,산70-2~72-1, 산77, 산78, 산79-1~79-3, 산80,81-1~81-2,산84,산86번지	갈현동	갈현동 1~515-1, 515-4, 516, 516-2, 517~ 519-10, 520~551-4, 산1~156-13 ,산158-4,산158-6,산159~165-2 번지	현 행			개 정			행정동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행 정 동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하대원 동	1	여수동,도촌동,갈현동 일원하대원중100~537의9,538의1,산1~산22의1,산31~산46	하대원동	1	하대원동 일원	도 촌 동	1	도촌동,여수 동,갈현동 일원	자치행정과	"
		현 행		개 정																																			
동 명	관 할 구 역	동 명	관 할 구 역																																				
도촌동	도촌동중 1~393, 401~401-6,402-1~472-2, 428~429-4, 429-6, 440, 440-1, 441, 443,464, 466, 470, 471, 474-2, 산1-1,산1-2,산2~산77, 산84~87	도촌동	도촌동 1~15-2, 15~5, 17~22-1, 22-3~ 25-4, 26~26-1, 27-1~27-5, 30~30-2, 46-3~65-2, 79~87-1, 150, 169, 171~177, 182~187, 197, 289~260, 328~329, 332, 413~428-1, 440~466, 504~754번지 산1~13, 산14~32, 산37~37-1, 산40, 산41-144-3,산44-6~46, 산46-2, 산47, 산48-1~48-3, 산48-7~49, 산49-2, 산50, 산50-3 ~51-6, 51-11~61, 산67-3, 68~69,산70-2~72-1, 산77, 산78, 산79-1~79-3, 산80,81-1~81-2,산84,산86번지																																				
		갈현동	갈현동 1~515-1, 515-4, 516, 516-2, 517~ 519-10, 520~551-4, 산1~156-13 ,산158-4,산158-6,산159~165-2 번지																																				
현 행			개 정																																				
행정동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행 정 동	동장 정수	관 할 구 역																																		
하대원 동	1	여수동,도촌동,갈현동 일원하대원중100~537의9,538의1,산1~산22의1,산31~산46	하대원동	1	하대원동 일원																																		
			도 촌 동	1	도촌동,여수 동,갈현동 일원																																		
			자치행정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1	성남시 여성임대 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을 당초건축 승인한 취지를 살려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여성 으로 조정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우리시 관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건립 취지 및 건축 승인한 취지를 살려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 입주대상자를 조정 (안 제5조) 나. 입주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 여성들에게 혜택 제공(안 제5조)	지역경제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제안이유 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시행 (2006. 10. 29)됨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에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도 재래시장과 같이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 및 절차 마련 나.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 상인회 설립과 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 주요골자 가. 시장구역을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 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함.(안 제3조)	지역경제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나. 인정시장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함.(안 제6조) 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함.(안 제11조) 라.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함. (안 제12조) 마. 임시시장의 등록은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농업인직영매장의 설치는 농업인이 직접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직접 소매 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사. 상인회의 설립은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안 제23조)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3	성남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판교신도시·여수임대주택단지·송파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관내 농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여건에 맞게 농지 관리 위원회 위원 정수의 축소 조정이 필요하고 ○ 2007. 2. 21.자로 농지법이 내용은 변동 없으나 조항이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조례도 이에 맞추어 농지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 농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거나, 농지법에서 폐지된 사항에 대한 조례규정을 삭제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송파 신도시 편입지역인 창곡동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 정수 1명을 축소하여 현행 북정동 위원이 창곡동 지역을 겸임 관할하고, 도촌 택지개발지구 및 여수 임대주택단지 개발에 따라 기존의 여수동, 갈현동, 도촌동 각 1명이던 정원을 도촌동과 갈현동을 통합하여 1명 축소하고, 판교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판교, 삼평, 백현동 지역 위원3명을 1명의 위원으로 축소하고, 운중동 및 하산운동을 통합하여 1명 축소 하는 등 총 5명의 위원 정수를 축소함(안 별표1) 나. 농지법 조항이 개정되어 조례도 이에 맞게 인용 조항을 수정함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다. 농지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거나 농지법에서 폐지된 사항에 대한 조례규정을 삭제 함(안 제6조, 안 제8조)	지역경제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4	성남시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제안이유 ○ 1980.12.31.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례로 제정하여 규모이하(5마력) 제분업의 신고를 받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 2007.8.3.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규모이하 제분업에 대하여도 단서 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등록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지역경제과	경제환경 위 원 회
15	성남시 사환곡 관리 조례폐지 조례안	☐ 제안이유 ○ 1973.03.06.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궁핍한 농가에 곡식을 대여하여 일정기간 후 이자를 붙여 곡식을 회수함으로써 농가의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였으나 ○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금액에서 할인된 가격(50%)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타 시군 현황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포천시를 제외한 시·군은 폐지하였음.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지역경제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6	성남시 기업육성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성남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육성 환경(環境)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업육성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 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업육성환경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출판로 및 기술 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6조) 다.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민원 1회방문처리 지원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기업인에 대하여는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참가 우선지원 과 예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제19조)	기업지원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7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 제안이유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운용한 성남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의 목적이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 매년 용자건수는 급격하게 줄어 사실상 기금 운영의 가치와 필요성이 없어 『성남시도시가스 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기업지원과	경제환경위원회
18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예규로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되어 우리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향후 금고 지정 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 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에 의한 방법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의계약 방법이 있음(안 제2조) 다. 회계 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공기업 제외)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지정 가능하며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임(안 제2조) 라.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신용도, 재무구조, 금리, 기여도, 관리능력, 협력사업 등임(안 제3조)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안 제4조)	세 정 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9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 (경기도 세정과-17248, 2007.10.10.)되어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 ○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 지금까지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지원 하도록 개선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 정정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 ·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상사업을 정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안 제9조의2)	세 정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0	2008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 '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01~'07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 '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15조) ○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 ·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17조) □ 제안이유 ○ 취득(토지, 건물) 1)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 야탑동 68번지 소재 첨단기술연구센터 내 전자부품연구원을 활용한 관내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R&D 센터설치 등 첨단인프라 조성의 필요성 대두 • 야탑동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430면 규모의 부설주차장 확보와 진입도로(L=580m)의 신설이 요구되어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토지 36필지 36,705㎡ 및 건축물 1,604.5㎡의 매입이 필요함	회 계 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야탑동 221(대 5,062.2㎡)부지상에 지상3층, 지하2층(주차장)을 건립하여 - 관련사업 유치를 통한 IT,BT,NT 등 유관 우수산업을 유인하고 고령친화제품의 인식 확산 및 능동적 수요창출을 견인하여 고령자의 학습·교육장소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도촌지구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 도촌 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사업지역의 54%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도촌동 143번지일원, 1,632㎡)건립이 필요하여 - 지구단위계획상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도촌동 143번지일원에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부지매입 후(1,632㎡, 조성원가 1,169천원/㎡) 건립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5,385㎡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 4) 판교지구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 판교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입주가 2009년 10월부터 시작되어 신규유입 인구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판교동 475-3 번지일원, 2,934㎡)건립이 필요하여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지구단위계획상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판교동 475-3번지(복1)상에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매입후 (2,934㎡, 조성원가 225만원/㎡)건립 규모 지상3층 연면적 1,487.4㎡의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5) 판교지구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2008년 12월부터 입주하는 판교지구내에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아동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 지구단위계획상 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된 사송동 산67-1번지일원(복4)상에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매입후 (1,653㎡, 조성원가 225만원/㎡)건립규모 지상3층, 연면적 1,487㎡의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6)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청사 건립 - 현 차량등록사업소는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부득이 임시 청사를 건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계획상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판교동 223-1번지(대지, 15,165㎡)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71.09㎡를 신축하여 대주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주요골자 ○ 취득(토지, 건물) 1) ‘가칭’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및 신축 • 토 지 ----- 1건 36,705㎡ 22,055,477천원 - 야탑밸리 조성부지 매입 (야탑동 4-2 번지 일원) -- 1건 36,705㎡ 22,055,477천원 • 건 물 ----- 3건 31,604.5㎡ 42,083,395천원 - 조성부지내 건물매입 (야탑동 4-2번지외 1) -- 2건 1,604.5㎡ 1,583,395천원 - 야탑밸리 신축 (야탑동 4-2번지 일원) -- 1건 30,000㎡ 40,500,000천원 2) 고령 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건립 • 건 물 ----- 1건 12,074㎡ 32,168,595천원 - 종합체험관 신축 (야탑동 221번지) -- 1건 12,074㎡ 32,168,595천원 3) 도촌지구내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 토 지 ----- 1건 1,632㎡ 1,907,872천원 - 종합사회복지관부지매입 (도촌동 143번지 일원) -- 1건 1,632㎡ 1,907,872천원 • 건 물 ----- 1건 5,385㎡ 14,206,498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도촌동 143번지 일원) -- 1건 5,385㎡ 14,206,498천원 4) 판교지구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복1) • 토 지 ----- 1건 2,934㎡ 6,601,500천원 -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판교동 475-3번지 일원) -- 1건 2,934㎡ 6,601,500천원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건 물 ----- 1건 1,487㎡ 3,332,559천원 - 시립보육시설 신축 (판교동 475-3번지 일원) 1건 1,487㎡ 3,332,559천원 5) 판교지구내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복4) • 토 지 ----- 1건 1,653㎡ 3,719,250천원 -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사송동 산67-1번지 일원) 1건 1,653㎡ 3,719,250천원 • 건 물 ----- 1건 1,487㎡ 3,332,559천원 - 시립보육시설 신축 (사송동 산67-1번지 일원) 1건 1,487㎡ 3,332,559천원 6)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및 청사 건립 • 토 지 ----- 1건 15,165㎡ 34,100,000천원 -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 (판교동 223-1번지 일원) 1건 15,165㎡ 34,100,000천원 • 건 물 ----- 1건 5,771㎡ 10,800,000천원 -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판교동 223-1번지 일원) 1건 5,771㎡ 10,800,000천원		
21	성남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제안이유 ○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소비 선호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성남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여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관리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하여 확산분위기를 조성 함 (안 제13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을 실시 함 (안 제15조) ○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 지원토록 함 (안제16조) ○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토록 함 (안 제17조) ○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안 제18조) ○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친환경 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22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증대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 제안이유 ○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율 목표치(55%)를 제시하고 봉투가격 현실화 촉구('06년 우리시 주민부담율 : 28.3%) ○ 우리시 봉투가격은 '95년 종량제 도입후 '04년 1회 가격 인상(37%) 하였으나 도내 중위권이며 도내 대도시중 봉투가격이 제일 낮음 • 20ℓ 가격 : 성남 400원, 수원 600원, 안양·부천 550원, 광주시 500원 ○ 타 공공요금에 비해 종량제 봉투 주민부담율이 매우 낮아 매년 청소재정 자립도 하락 • 주민부담율 : 종량제 28.3%, 상수도요금 110.56%, 하수도요금 56.03%	청소행정과	경제환경위원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23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주요골자 가. 주민부담을 환경부 가이드라인(55%)보다 낮은 35%를 목표로 봉투가격 조정 (평균 인상률 29%, 별표7) <table>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주 민 부담률</th> <th rowspan="2">평 균 인상률</th> <th colspan="7">소각용·음식물·재사용·가내공업용</th> </tr> <tr> <th>2ℓ</th> <th>3ℓ</th> <th>5ℓ</th> <th>10ℓ</th> <th>20ℓ</th> <th>50ℓ</th> <th>100ℓ</th> </tr> <tr> <td>현 가</td> <td>28.3</td> <td>-</td> <td>40</td> <td>60</td> <td>100</td> <td>200</td> <td>400</td> <td>900</td> <td>1,800</td> </tr> <tr> <td>조 정</td> <td>35</td> <td>29</td> <td>50</td> <td>80</td> <td>130</td> <td>250</td> <td>500</td> <td>1,220</td> <td>2,420</td> </tr> </table> <table> <tr> <th colspan="2">사업장용</th> <th colspan="3">마 대</th> </tr> <tr> <th>50ℓ</th> <th>100ℓ</th> <th>5kg</th> <th>10kg</th> <th>50kg</th> </tr> <tr> <td>1,700</td> <td>3,400</td> <td>200</td> <td>400</td> <td>2,000</td> </tr> <tr> <td>2,010</td> <td>4,010</td> <td>340</td> <td>660</td> <td>2,370</td> </tr> </table> □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등 하수도법의 전부개정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따른 사용료 인상 방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가.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 나.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현실화율 59.15% → 73.731%) 조정 라.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삽입 마.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함	구 분	주 민 부담률	평 균 인상률	소각용·음식물·재사용·가내공업용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현 가	28.3	-	40	60	100	200	400	900	1,800	조 정	35	29	50	80	130	250	500	1,220	2,420	사업장용		마 대			50ℓ	100ℓ	5kg	10kg	50kg	1,700	3,400	200	400	2,000	2,010	4,010	340	660	2,370	하수관리과	”
구 분	주 민 부담률	평 균 인상률				소각용·음식물·재사용·가내공업용																																																							
			2ℓ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현 가	28.3	-	40	60	100	200	400	900	1,800																																																				
조 정	35	29	50	80	130	250	500	1,220	2,420																																																				
사업장용		마 대																																																											
50ℓ	100ℓ	5kg	10kg	50kg																																																									
1,700	3,400	200	400	2,000																																																									
2,010	4,010	340	660	2,370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4	성남시 국가 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 하는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에 있음. □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에서 희생공헌 대상요건 확대 (안제2조)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나. 예우대상 확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대상 (안제3조) 다. 기념비 및 기념탑등 현충시설 건립 (안제5조 제6호 내용추가) 라. 보훈명예수당 및 지급대상자 규정 (안제8조, 안제9조) 마. 수당지급결정 및 지급중지규정 (안제11조, 안제12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위 원 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5	성남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과 불합리한 용어 정비 ○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한 영향분석·평가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함 ○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 정책책임담당관 지정및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 □ 주요골자 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책에 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제7조) 나.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장) 다. 여성정책책임담당관 지정·운영 (안 제36조) 라. 여성정책책임담당관의 임무 (안 제37조) 마. 「성남시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38조, 제39조) 바.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의 직무 (안 제40조) 사. 여성정책조정회의 회의 운영 (안 제41조) 아.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42조) 자. 의견청취, 수당지급, 기타 사항 (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차.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세부사항 추가 (안 제48조) 카. 기타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	가족여성과	사회복지 위원회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거주자들의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 및 관내 자격요건 강화 ○ 추모의집 사용자의 자격범위 등을 강화하여 성남시민에게 수혜 제공 □ 주요골자 가. 관외 이용자의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인상 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내거주 참전유공자의 화장장, 추모의 집, 유택동산 사용료 면제 범위 설정 다. 추모의집 이용자 자격요건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중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자격요건 통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위원회
27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청소년 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의 기초를 마련 하는 데 있음. □ 주요골자 ○ 제1장 총칙 : 제1조~제5조 · 제1조 : 목적 · 제4조 : 사업 - 활동진흥, 보호 및 복지, 시설 및 사업의 위탁 운영관리 ○ 제2장 재산 및 회계 : 제6조~제15조 · 제6조 : 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제7조 : 재산의 관리 · 제9조 :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제11조 : 잉여금의 처리 - 세입으로 처리 · 제1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체육청소년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16조~제26조 · 임 원 - 임원수 : 15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감사2인 -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 사 : 선임직 - 청소년 관련분야 인사 중 이사회가 추천 당연직 -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시의회 의원 2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남교육청 학무국장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직 원 -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이상 근무 한 자 - 수련관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이상 경험자 - 팀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3년이상 경험자 - 재단의 전문분야 직원은 청소년 관련학과 졸업자·청소년지도사·상담사·교직이수자·사회복지사·장애인 관련분야 졸업자 또는 청소년 관련 분야 3년이상 경험자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제4장 이사회 : 제27조~제32조 · 제29조 :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개회,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제5장 위원회 : 제33조~제38조 · 위원회 : 정책자문, 운영위원회(위원: 10명 이내) · 인사위원회 : 7인 이내로 구성 ○ 제6장 사무기구 : 제39조~제40조 · 사무국과 청소년시설로 구성된 사무기구 · 재단의 정원은 75명 · 예산변동을 수반하는 직제, 조직 변경이 필요 한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 ○ 제7장 보칙 : 제41조~제45조 · 정관변경, 해산,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공고 등 ○ 부 칙 : 제1조~제7조 · 고용승계 : 고용승계대상자는 재단설립 당시 의 해당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한 한다		
28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중원구 상대원1동 1517번지 지역청소년 센터 설치에 따라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여, ○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성남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탁근거 및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32조제2항(청소년이용시설)	체 육 청소년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9	재단법인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나. 위·수탁자 선정 ○ 위 탁 자 : 성 남 시 ○ 수 탁 자 : 공모에의한 민간 위탁 다. 위탁대상 ○ 시설명 : 지역청소년센터 ○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517번지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 제안이유 ○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중앙 공원 야외공연장을 성남아트센터와 시민회관 등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존 야외공연장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문화재단 정관변경(정원 96명→101명)이 필요하여 ○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함. □ 주요골자 가. 조직 및 정원(안 제28조) 현행 :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정원은 96인 이내로 한다. 변경 :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정원은 101인 이내로 한다	문화예술과	"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30	성남시 도로명 주소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용·관리 및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 고시내용(제3조 ~ 제5조) ○ 자체 제작 ·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제6조 ~ 제8조)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제9조 ~ 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제15조 ~ 제18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등(제19조 ~ 제21조) ○ 도로명 및 주소의 사용 촉진(제22조 ~ 제23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제24조 ~ 제31조) ○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인정 등(부칙)	토지정보과	도시건설 위 원 회